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46)

검 토 보 고

1. 발의자(제출자) 및 발의(제출) 경과

연번	의안 번호	구 분	발의자 및 제출자	발의 및 제출일	회부일
1	2023	의원발의안	이숙자의원 찬성의원 14명	2024년 8월 12일	2024년 8월 14일
2	2046	시장제출안	서울특별시장	2024년 8월 12일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가. 이숙자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2023)

1)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 명칭이 폐지되고 ‘조교수’로 정비(2011.7.21. 개정 및 시행)된 지 13년이 흘렀음에도 이를 조례에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인용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입법예고(2024.8.20. ~ 8.24.) : 의견 없음.
- 다) 비용추계 : 비대상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안(의안번호 2046)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 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4) 기타

- (1) 입법예고(2024.5.30. ~ 6.19.) 결과: 의견없음.

3.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및 검토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명칭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안 제4조제1항 제2호(이숙자 의원안, 시장안 중복))하고,

* 「고등교육법」(법률 제10866호, 2011.7.21. 일부개정, 2011.7.21. 시행)

- 서울특별시상 제출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안 제4조의2제4호) 시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안 제16조), 본 조례의 두 개 조문을 개정하며(시장안),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02(2023.11.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 등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시장안).

- 본 개정조례안 2건은 법률 개정 및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개선하려는 점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음.

- 다만,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명칭 관련 법령 개정(2011.7.21. 일부개정) 사항과,

-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권고」(2023.11.8.) 사항에 대한 재무국의 입법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여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내용 검토

1)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명칭(안 제4조제1항제2호,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자격요건 중 대학에서의 재직경력 요건 중 현행 “전임강사” 용어를 “조교수”로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내용>

「고등교육법」

[법률 제10866호, 2011.7.21. 일부개정, 2011.7.21. 시행]

◇ 주요내용

가. (생략)

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안 제14조제2항)

전임강사인 교원의 경우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전임강사의 명칭을 폐지하고 이를 조교수에 포함함.

다. (이하 생략)

< 본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각 개정안 비교표 >

현 행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1.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2. ----- ----- ----- 조교수 ----- ----- ---	2.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3. (생략) ② ~ ⑦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3.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② ~ ⑦ (이숙자의원안과 같음)

- 다만, 본 개정안은 근거법인 「고등교육법」 개정(2011.7.21.) 후 13년이 경과하였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 제안서평가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과 같은 내용(전임강사를 ‘조교수’로 개정)의 시민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재무국에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2023.12.22.)한 바 있음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 처리 결과〉

시 민 제 보 사 항	소관부서	처 리 결 과 (답변내역)
<input type="checkbox"/> 제보내용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제안서평가위원의 자격조건을 법령에 맞게 개선 필요	재무국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답변내역) <input checked="" type="radio"/> 고등교육법 개정 사항(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본다)을 반영, 규칙상 제안서평가위원 자격조건을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를 ‘조교수’ 이상으로 개정('23.4.13)하여 공포·시행 중임

- 동일한 기관(재무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개정 수요(대학 재직경력 요건 명칭 변경)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점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완결성 유지를 위한 재무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숙자의원안에 대하여 재무국은 원안가결 의견을 제출하였음(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재산관리과-9971(2024.8.14.)).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근거 삭제(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시장안)

- 시장안 제4조의2제2항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안을 삭제하여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생략)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1. ~ 3.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삭 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 그러나,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처분이 의무화된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이나 폐지의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는바,

* 현행 본 조례 제4조의2제2항4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2019.3.28. 신설),

-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의 정비 권고(2023.11.8.)”를 반영하려는 것임.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중〉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규정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생략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법§16②)
 - (문 제 점)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일부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 정비

- 다만, 본 조례의 조항이 93개조에 달하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 외의 추가적인 위법성 조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3)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 개선(안 제16조, 시장안)

- 시장안 제16조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에서 ‘사용허가 받은 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u>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제16조(무상사용기간)	----- ----- -----	<u>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u>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기산(5년 이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산(최장 20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생략)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로 규정하여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그 기산일을 ‘사용허가 일’로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중>

법제처에서 권리 침해사례로 정비 권고했으나, 미정비한 규정

-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
 - (관련규정)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음(법§21①)
 - (문제점) 기부채납일은 재산의 소유권 이전한 날로서 기부자의 실제 사용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 조례에서 ‘기부채납일’을 기산일로 정하여 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 일’이 되도록 개정

4) 자구 등 정비(안 제3조 등 16개 조(條), 시장안)

- 안 제3조 등 16개 조(條)의 개정안은 조문 띄어쓰기, 약칭의 사용, 자구 수정 등 법제심사 과정에서의 수정·보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바,
 - 법령은 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당위성으로 볼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가) 자구 등 정비(안 제3조 등 16개 조, 시장안)

<서울특별시 법제심사 반영사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안 제3조	각 호	각 목	법 조문 체계 적용
	용도이외	용도 외	법제심사(맞춤법)
안 제7조	시정을 요하는	시정이 필요한	법령정비기준 (일본어 투 표현)
안 제18조의2 외 5개 조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	약칭 사용* (안 25, 26, 36, 38조, 71조)
안 제30조	감면	감경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 4항 각 호 외 부분)
	감경	감면	(제6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안 제31조 제3항	서울특별시금고은행	시 금고(「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금고 관련 근거 조례의 정의(제2조제1호) 반영
안 제39조의2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 되며 · 위촉하되 · 과반수이상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 · 말고 · 임명 또는 위촉하되 · 과반수가	법령 등 표시(흔뺏표) 삭제(제1항) 자구 정리, 당연직 공무원 임명 등 구분, 의미 중복 표현 문구 삭제(제3항)
	주사가 된다	주무관이 맡는다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대외 직명(「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2010.6.) 반영**, (제6항)
	위원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회 의사정족수 명확화(제7항), 띄어쓰기
안 제39조의3	치료를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법령정비기준(일본어 두 표현)
안 제47조	범위 안	범위	알범(권고안)
안 제50조	허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前)에 나온 규정을 부정하는 의미의 법률적 표현
안 제52조	사용대상 공무원	사용자	관사: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안 제71조	긴급처분을 요하는	긴급처분이 필요한	법령정비기준(일본어 두 표현)
	수선을 요하는	수선이 필요한	
안 제72조	요하는	필요한	법령정비기준(일본어 두 표현)

* 약칭(서울시/서울특별시 → “시”) 사용: 안 제18조의2제1호 등 6개 조(條) 15건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적 호칭

5) 부칙

- 본 개정조례안(2건)은 법률 개정 및 정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쉬운 용어로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개선 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규정 없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하는 본 부칙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부 칙(안)	
(이숙자의원안)	(시장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붙임**[요약]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02(2023.11.8.)

- 안 제4조의2, 안 제16조 관련 -

추진 배경

-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된 자치단체 조례 중에서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존재
- ⇒ (정비방향)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및 지자체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해소

< 주요 정비대상 >

- ① 법제처에서 권리 침해 사례로 정비 권고했으나, 미정비한 규정
⇒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시설물 철거 등 위반, 공유재산 사용기간 임의 축소 사례
- ②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한 규정
⇒ 공유재산 심의대상 임의생략, 부적절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구성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5개 정비유형, 207건의 위반사례 발굴
< 유형별 정비대상 >

(단위 : 건)

법제처의 권리 침해사례 정비 권고, 미정비 (168건)			공유재산조례 중 공유재산법령 위반 (39건)			합 계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공유재산 시설물 철거시 임의 처분	공유재산 사용기간 부적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생략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 부적절		
32	5	131	34	5	207	

- 207건 위반사례 중 시·도 14건(6.8%), 시·군·구 193건(93.2%) 차지
- 정비대상 상위 지자체는 전남(26), 경기(24), 충남(19), 서울(19) 등

< 지자체별 정비대상 >

(단위 :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계	19	6	8	14	7	6	7	1	24	16	11	19	12	26	14	15	2	207
광역	2	-	1	2	-	1	2	1	-	-	1	1	-	-	-	1	2	14
기초	17	6	7	12	7	5	5	-	24	16	10	18	12	26	14	14	-	193